

의안 번호	2222	【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2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19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임미영)

### 가. 제안이유

- 종갓집 노인복지관이 2024년 하반기 개관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갓집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위탁 운영코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
- 위탁사무의 내용
  - 노인복지관 운영 업무 전반
  -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수탁자 선정방법 :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(사회복지법인)와 위탁계약 체결
- 위탁기간 : 2024. 5. 1. ~ 2029. 4. 30.(5년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」 제4조(시설의 운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동학)

- 종갓집 노인복지관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연면적 1,000㎡미만으로 “분관”의 유형에 해당하고, 인근 노인 인구수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위탁운영 함에 있어
  
-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,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(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)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임.
  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# 「노인복지법」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」

제4조(시설의 운영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### 제6조 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